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71
----------	------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6일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 조규영·우창윤·최웅식·
양준욱·오봉수·김광수(도봉)·박준
희·김종욱·김문수·
박기열·유광상·김용석(도봉)·최조
웅·전철수 의원(14명)

1. 제안 이유

정부(국토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기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에서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통합심의회에서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 변경절차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일부 개정·공포¹⁾하고 본격 시행²⁾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강화코자 함

2. 주요 골자

-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
-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신설(안 제6조)
- 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7조 및 서식1)
- 라.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 변경절차 신설(안 제8조 및 서식2)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2015년 7월 24일
2) 2016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이란”을 ““교통영향평가”란”으로,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50”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건설되는”을 “건설되는 건축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승인등”을 “승인 등”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대책에 대하여 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영 제13조의5”를 “영 제13조의4”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선대책 수립시”를 “교통영향평가 시행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3조의5”를 “영 제13조의4”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대책과”를 “교통영향평가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회의시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9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중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중 “개선대책과”를 “교통영향평가서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식1]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0.00)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사업자)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명			
	사업규모	심의일자		
	사업기간	심의결과 통보일자		
수립 대행 업체	업체(사업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립대행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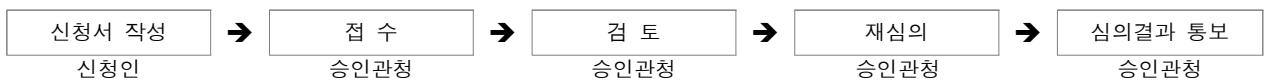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식2]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0.00)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0일
신고인	대상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시설소재지			
	시설면적	사용승인일자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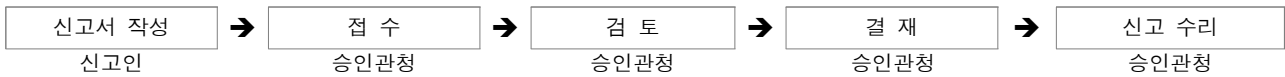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p> <p>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 등)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p> <p>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p> <p>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교통영향평가 ----- ----- -----</p> <p>제2조(정의) ----- ----- 1. “교통영향평가”란 ----- ----- ----- -----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 2. -----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p> <p>제3조(교통영향평가 -----) ① ----- ----- ----- 교통영향평가 ----- 1. ----- 50 이상 ----- 2. ----- ----- 건설되는 건축물의 ----- ----- ----- ----- 교통영향평가 ----- ----- -----</p>

제4조(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개선대책의 수립 시행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영 제13조의5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개선대책 수립은 2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선대책 수립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대책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교통영향평가서 -----) ① --

-- 교통영향평가 -----

승인 등-----

-- 승인 등-----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

② ----- 교통영향평

가서의 -----

③ -----교

통영향평가서를 ----- 영 제13조의 4-----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단서 삭제>

④ -----

--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① 영 제13조의4-----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

----- 교통영향평가서와 -----

<p>을 심의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u>해당 회의시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하고</u>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 ⑦ (생략)</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신설></p>	<p><u>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u></p>
<p><신설></p>	<p><u>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u>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u>개선대책</u>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u>개선대책과</u>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제9조(<u>교통영향평가</u> -----) -----</p> <p>----- <u>교통영향평가서와</u> -----</p> <p>-----.</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 (현황과 같음)</p>

<신 설> [서식1]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0.00)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사업자)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규모	심의일자		
사업기간		심의결과 통보일자		
수립 대행 업체	업체(사업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립대행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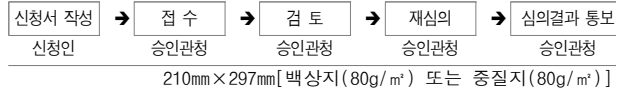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 설> [서식2]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0.00)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0일
신고인	대상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시설소재지			
	시설면적		사용승인일자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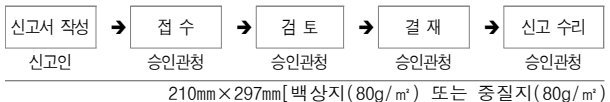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동욱